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육공무원승진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 예외사항 규정(안 제20조)

- 1)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
- 2)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(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에 한함)은 근무시간 면제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갈음함(기존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·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2. 9. ~ 3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직위해제”를 “직위해제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 받은 경우(이하 “근무시간 면제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파견으로 인하여”를 “파견 또는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되어”로 한다.

제41조제3항제3호 전단 중 “제8조의2”를 “제8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1항”을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평정의 예외) ①교감등이 휴직, <u>직위해제</u>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.	제20조(평정의 예외) ①----- --- <u>직위해제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경우(이하 “근무시간 면제자”라 한다)</u> ---.
②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·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<u>파견</u> 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파견 또는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되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가산점) ① · ② (생략)	제41조(가산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	③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	3. -----

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<u>제8조</u> <u>의2</u>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 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·관 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.02 점.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.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 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, 1 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 합계를 정할 수 있다. 4.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「<u>학교폭력예방 및 대</u> <u>책에 관한 법률</u>」 제11조제11 <u>항</u>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 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.1점. 이 경우 가산점 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. 가. ~ 다. (생략) ④ ~ ⑨ (생략)	----- ----- <u>제8조</u> <u>의3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.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</u> <u>에 관한 법률</u>」 제11조제1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9